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35회 임시회

# 검 토 보 고 서

2020. 2. 7.(금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안	장덕준 의원 외 6명



**행정건설위원회**  
(전문위원 유준상)

**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
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안”  
검 토 보 고**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**1. 제출자 및 제출경과**

- 제출자 : 장덕준 의원 외 6명
- 제안일 : 2020. 1. 29
- 회부일 : 2020. 1. 29. (의안번호 : 20 -10)

**2. 제안이유**

-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**3. 주요내용**

- 목적(안 제1조)
- 기능(안 제2조)
- 보조금 지원(안 제3조)
-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(안 제4조)
- 지도 및 감독(안 제5조)
- 표창(안 제7조)

#### 4. 관계법령

- 「대한민국헌법」 제92조
-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제1항
-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 제30조(협의회) 제1항, 제30조의2(경비의 지원)

#### 5. 참고사항

- 보조금 지급현황 (단위: 천원)

지급년도	총보조금	사업비	운영비
2018	32,000	22,400	9,600
2019	38,000	22,400	15,600

#### 5. 검토보고

- 본 제정조례안은 장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
  - (안 제1조)에서는 목적에 관한 내용임.
  - (안 제2조)에서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과 주민 합의 도출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마포구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
- (안 제3조)에서는 마포구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,
- (안 제4조부터 안 제6조)까지는 마포구협회의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,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,
- (안 제7조)에서는 지역의 통일기반 구성에 기여한 마포구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조례안은 「대한민국헌법」 제92조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,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마포구협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다만, 조례 제정 전 상위법 근거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된 만큼 사업비와 운영비가 비목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보조금 정산 시 지출현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임.